대한민국 복지허브 No.1 경기복지재단

vol. 19

G-Welfare Weekly Report

경기복지재단 | 발행인 (박춘배)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1150 신관3층 | Tel. 031-267-9399 | www.ggwf.or.kr | 2015.09.16.

01 중앙정부 정책동향

1. 치매극복을 위한 맞춤형 가족 정책 추진 필요

01 주요 내용

- 9월 21일은 전 세계적으로 급증하는 치매에 대응하기 위해 세계보건기구가 정한 '치매의 날' 로 우리나라는 2007년부터 '치매극복의 날' 로 지정하여 치매관련 캠페인을 진행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집계에 따르면 치매환자수는 2012년 355,581명에서 2013년 405,475명, 2014년 443,149명으로 3년 새 24.6% 증가
  - 국회 예산정책처(2014)*는 65세 이상 노인 치매 유병률이 2020년 10%를 돌파해 2050년 15%까지 높아질 것으로 전망

*치매관리사업의 현황과 개선과제

- 치매환자는 인지 기능 저하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이 어렵기 때문에 가족 등으로부터 간병을 받아야 하고, 이로 인한 경제적인 부담이 커지는 것이 사회문제가 되어 지난해 7월 1일부터 '장기요양 5등급(치매특별등급)' 을 신설
  - 해당자가 의료인의 소견이 포함된 '치매특별 등급용 의사소견서' 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 인지기능 악화 방지 및 잔존 능력 유지를 위해 '인지활동형 프로그램' 을 주3회 또는 월 12회 이상 주야간보호기관이나 요양보호사의 방문을 통해 제공받을 수 있음

*인지활동형 프로그램 : 회상훈련, 기억력향상 활동, 전화, 장보기 등의 일상생활 함께 하기 등이 내용

- 치매특별등급 도입은 치매 완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장기요양서비스 현장에서는 효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가 존재
  - 치매특별등급 인정자에게는 기존의 요양서비스와 달리 가사지원을 하지 않고 인지활동형 프로그램만 제공하면서 서비스 신청자가 예상보다 적고
  - 인지활동프로그램을 제공해주는 요양보호사의 교육 커리큘럼의 효과성이 검증되지 않았으며,
  - 치매 환자에 대한 정확한 진단 및 가용 시설과 요양보호사를 지도해줄 전문 인력이 부재

02 경기도에의 시사점

- 경기도는 만 6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치매검진사업, 치매치료관리비 본인부담금 지원, 보건소 내 치매상담센터 운영, 광역치매센터 운영 등의 사업을 진행해오고 있음
  - 경기도의 치매환자 수는 2013년 103,907명에서 2014년 120,175명, 올해 125,675명으로 3년 새 20% 증가하여 전국 치매환자수의 18.0%~19.6%를 차지
- 올해부터는 국가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증 치매환자를 일정시간 돌봐주는 '가족사랑이음센터' 를 의정부와 김포, 양평 보건소에 설치 · 운영 중이며, 18년까지 45개소로 확대할 예정
- 치매가족이 겪는 문제를 완화하고 만족감을 높이기 위해 치매 진행단계와 가족 특성을 고려한 개인별 맞춤형 통합 가족프로그램 운영 필요
  - 직장을 그만두거나 사회활동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서비스 이용비 지출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과 심리적 부담감, 우울증상, 건강관리 기회 감소 등의 문제 해결 제고

2. 국토교통부 '서민 · 중산층 주거안정 강화 방안' 발표

01 주요내용

- 정부는 서민주거안정대책으로 주거취약계층 지원 강화, 뉴스테이 활성화, 원스톱 주거지원 안내시스템 구축, 정비사업 규제합리화, 정비사업 투명성 제고 방안 등을 발표(9.2.)

구분	주요 내용
주거취약계층 지원 강화	시세 30%수준 고령층 전세임대 연 2000가구 공급, 공공실버주택 16곳 신설/ 대학생전세임대 5천가구 확대, 행복주택 3만가구 중 대학생에 5천가구 우선 배정 향후 3년간 대학생 행복기숙사 10곳, 2000실 공급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활성화	올해 시범사업 6000가구 공급, 내년 공급물량 2만가구로 확대 은행 등 재무적 투자자에게 각종 인센티브 제공
원스톱 주거지원 안내시스템 구축	마이홈 포털(온라인), 마이홈 상담 센터(오프라인), 마이홈콜센터(전화) 운영/ 행복주택, 뉴스테이, 주거급여 등 맞춤형 주거지원 대책 안내
정비사업 규제 합리화	정비사업 동의요건 완화, 동의서 철회제한/정비구역 지정권한을 시장 · 군수로 이양/기반시설 기부채납을 현금납부방식으로 대체 허용/준주거상업지역내 정비사업시 오피스텔 공급 허용/용적률 인센티브에 따른 임대주택 공급부담완화
정비사업 투명성 제고	CEO조합장(전문 조합관리인)제도 도입/ 추진위 · 조합설립 동의서에 검인제도 도입/ 장기지연 사업장에 공공기관참여 확대

- 서민주거의 가장 큰 문제는 전세값 폭등과 급격한 월세전환으로 인한 주거비부담인 만큼 안정적이고 지불가능한 주택을 선택할 수 있게 하는 정책으로의 변화가 중요
  - 이번 대책은 '뉴스테이' 와 공공임대 공급물량 및 대상을 확대, 주거비지원 강화가 주된 내용으로 그나마 독거노인 · 대학생 등 저소득 1인가구를 위한 민관합동 리모델링 임대사업 추진은 긍정적이나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
  - 재건축 · 재개발 활성화 보다는 전세난 등을 안정화하는데 방점을 둬야 하며, 전세의 월세전환은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되므로 안정적인 월세시장을 형성하도록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등 적극적인 월세시장 규제 정책이 필요

월세시장 안정화

02 경기도에의 시사점

- 서민과 중산층이 지불가능한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주택 임차과정에서의 비용 부담을 최소화하는 노력을 지속
  - 뉴스테이 정책은 장기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민간임대사업자 육성을 위한 정책으로 임대료 수준이 높아 서민층보다는 상위 30%만이 부담 가능한 수준이라는 비판이 존재
  - 경기도 차원에서 추진하는 따복희망마을, 따복건강마을, 따복사랑마을 등 취약계층을 위한 주택공급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
  - 경기도는 전국 최초 '경기도 부동산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를 제정(' 15.3.30.)하여 서민들의 부동산 중개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고 임대인과 임차인의 상생을 지원

지불가능한 임대주택 공급 확대

- 지역 별 '임대료조정권고위원회' 구성을 통한 '착한임대인 제도' 도입 고려
  - 현행 법 상 '임대료조정위원회' 구성은 어렵지만 지역단위의 '임대료조정권고위원회'를 구성하여 과도한 임대료 상승을 억제하도록 유도 (例)뉴욕시의 아파트 임대료 조정위원회는 임대기간이 1년인 아파트 임대료는 동결하고, 2년 임대는 임대료 상승폭을 2%로 제한)
  - 지역단위 임대료조정권고위원회는 도지사를 위원장(사군은 시장, 군수)으로 하고 적정임대료를 받는 주택에 '착한 임대주택' 현판 제공, 착한 임대인 격려 행사 등 유인책 마련

경기도형 '임대료 조정권고위원회 구성'

02 시·도/시·군 복지정책 동향 분석

1. 1인 가구, 잠재적 정책 수요의 중심

'1인이 독립적으로 취사, 취침 등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가구'로 정의되는 1인가구가 한국사회의 가족구조의 변화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요구됨

*통계청 정의

- 통계청은 1인가구의 비중이 2000년 15.6%에서 2015년 26.5%, 2035년 34.3%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였으나, 정책적 관심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최근 1인가구가 사회·경제적 약자로 대두됨

*현대경제연구원, 2015

- 1인 가구의 저소득층 비중(45.1%)은 2인 이상 가구 저소득층 비중(10.1%)에 비해 현저히 높고 연령별로는 20·30대 1인가구에서는 전월세 보증금·월세임차료 부담으로 인한 주거불안, 60대 이상 1인가구에서는 실직·저소득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과 고독사가 문제

- 1인 가구 지원 정책
  - 1인 가구에 대한 지원은 주로 주거복지분야에서 이루어지며 한국토지주택공사SH공사의 1인 가구를 위한 주택공급 지원사업, 정부의 전세자금 대출, 노인복지주택 입소지원 등이 있음

- 서울시,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한 1인가구 지원 기본 조례안」 발의('15.9.11.)

서울시는 최근 실시한 기초연구를 바탕으로 「서울특별시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한 1인가구 지원 기본 조례안」 발의하였으며,
조례에는 1인가구 복지정책의 추진에 대한 시장의 책무와 기본계획 수립(5년단위) 및 시행, 정책마련을 위한 실태조사, 1인가구 복지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을 마련

기초연구 : 서울연구원.2015. 「서울특별시 1인가구 대책 정책연구」

- 경기도의 1인 가구 규모
  - 통계청 "2010년 주택총조사" 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현재 경기도 거주 1인가구는 총 777,360가구이고 31개 시군 평균은 25,076가구임

(단위 : 가구)

순위	시군	1인가구	순위	시군	1인가구	순위	시군	1인가구
1	수원	92,869	12	남양주	24,346	23	포천	10,140
2	성남	77,242	13	안성	19,520	24	여주	8,014
3	안산	61,546	14	광명	18,662	25	하남	7,890
4	부천	59,244	15	파주	17,730	26	동두천	7,397
5	고양	58,392	16	오산	17,650	27	양평	7,288
6	용인	40,806	17	군포	16,427	28	의왕	7,218
7	시흥	35,686	18	이천	13,068	29	가평	4,509
8	안양	34,901	19	광주	11,752	30	연천	3,888
9	화성	29,792	20	김포	11,686	31	과천	3,524
10	평택	27,617	21	구리	11,302			
11	의정부	26,945	22	양주	10,309	평균		25,076

*자료: 경기연구원 2015. 『경기도형 공동체 주거모델 발굴 연구』

- 향후 경기도에서도 급격하게 증가하는 1인가구에 대한 주거·복지·사회서비스·고용 등 다양한 측면에서의 체감도 높은 정책적 대응 및 법적 기반 마련이 요구됨

2. 재단 주요 행사

기관/행사명	주요내용
사회복지기관 나눔문화 사례발표회	• 일 시 : 10. 2.(금) 14:00~16:30 • 장 소 :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컨퍼런스룸II A102호) • 대 상 : 경기도 사회복지기관 관계자 및 나눔문화 담당공무원 ※ 문 의 : 네트워크사업팀(☎031-267-9386)

03 FACT CHECK

의료생활협동조합, 불법의료 행위의 온상지인가?

- "의료생협 사무장 병원 119곳이 1,068억원을 부당하게 챙겼지만 환수율은 2.2%에 그치고 있다".(연합뉴스, 9.7.)
- 의료생협을 둘러싼 문제는 의료생협의 손쉬운 설립요건을 악용한 사무장병원으로, 이러한 유사 의료생협들은 불법 환자유치, 요양급여 부당청구 등으로 인해 단속의 대상이 되는 것이 사실
- 이는 의료생협과 관련된 법체계의 이원화, 관리주체의 불명확성, 권리권한의 부재가 원인
  - 의료생협 설치의 근거법령은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과 '협동조합기본법'이며, 이 중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의한 의료생협은 설립 및 운영이 상대적으로 수월하고 관리규정이 부재

주요 기준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근거법령(소관)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공정위원회)	협동조합기본법(기획재정부)
설립인가	보건복지부장관 인가	시 · 도지사 신고
설립 기준	조합원 300명/출자금 3,000만 원	조합원 500명/출자금 1억 원
1인당 출자금	최저 제한 없음/출자금의 최고 20%	최저 5만원/출자금의 최고 20%
특수관계인 출자	제한 없음	제한
자기자본비율	제한 없음	50% 이상
경영공시	의무사항 아님	의무사항

- 최근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해 설립되는 의료생협은 설립 요건 및 기준의 강화, 의료기관으로서의 공공성과 비영리성을 강조하며, 보건복지부의 관리감독 하에 투명한 운영이 담보됨
- 향후 의료생협은 인가조건을 일원화하고, 인가 서류 및 사후관리 기능을 강화하여 '예방의료와 공공의료 영역의 확장' 이라는 본연의 목적에 맞는 조합 운영이 되도록 관리 필요

*사무장병원 : 의료인의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필요한 자금을 투자해 시설을 갖추고 유자격 의료인을 고용, 그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한 병원

04 통계로 보는 복지

아동, 청소년의 정신건강 및 자살 충동 심각

전국 초중고생 자살자 수

자료 : 교육부.

초중고생 정서행동 관심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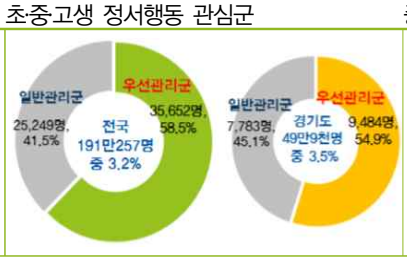

교육부(2015). 학생정서행동 특성검사 결과 및 조치 현황

중고생 자살위험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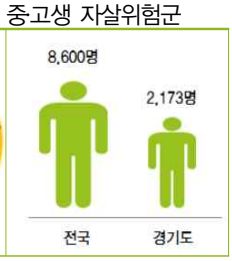

- 교육부가 국회에 제출한 전국 초1 · 4학년, 중 1, 고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한 정서행동검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학생 중 60,901명(3.2%)이 관심군으로 나타났고,
- 그 중 35,652명은 지속 관리 및 전문기관 의뢰 등 2차 조치가 필요한 '우선 관리군', 8,600명은 자살까지 생각하는 위험한 수준인 것으로 분석됨
- 학교 폭력, 입시경쟁의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학생들의 정신건강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위험 수준에 맞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